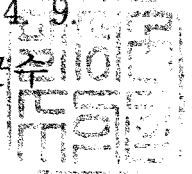


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1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4. 9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독창적 체험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전문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근거법령

- 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- 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
- 다.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

3. 위탁운영 계획

- 가. 위 치 :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037-15
- 나. 운영예산 : 113백만 원(인건비 73, 운영비 40)
- 다. 운영방식 :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 단체에 업무 위탁 운영
 - ※ 2019. 8. ~ 2020. 3. 기간제근로자 3인 고용 직접운영
- 라. 위탁기간 : 2020. 6. ~ 2022. 5.(2년간)
- 마. 수탁기관 : 공개모집·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
- 바. 조직구성 : 3인(총괄책임자 1인, 강사 2인)
 - ※ 수탁기관에서 인력구성(다양한 체험 강의를 원활한 자)
- 사. 주요업무
 - 체험프로그램 기획·운영(체험 발굴, 연구)

-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· 마을활성화 지원(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창업 운영관련 지원, 마을 자립역량강화 지원 등)
- 센터 운영사무(회계 · 사업지원 등) 및 시설 관리

4. 추진 경위

- 가. 2019. 8. :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개관
- 나. 2019. 8. ~ 2020. 3. : 기간제 근로자 3인 고용 직접운영
- 다. 2020. 3. :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· 관리 계획 수립

5. 향후일정

- 가. 2020. 4. :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· 접수
- 나. 2020. 5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
- 다. 2020. 6. : 협약체결 및 위탁운영 시행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
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**제3조(의회동의)**

-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**제4조(관리·운영)**

-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·운영사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